

[별표 7의2] <개정 2000.4.18>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 역 등 급 별 배 점 기 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시청포함) 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3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90분미만	90분이상 120분미만	120분이상 150분미만	150분이상	가지역: 25점이상 나지역: 20점이상 24점이하 다지역: 15점이상 19점이하 라지역: 10점이상 14점이하
가장 가까운 역·버스정류소(버스가 이용가능 지점포함)까지의 거리	2km이상 3km미만	3km이상 4km미만	4km이상 5km미만	5km이상 6km미만	6km이상	
1일 대중교통운행 편도회수	17회이상 20회이하	13회이상 16회이하	9회이상 12회이하	5회이상 8회이하	4회이하	
가장 가까운 병·의원 및 보건소·보 건지소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3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90분미만	90분이상 120분미만	120분이상 150분미만	150분이상	
출장(교육공무원의 경우 가정방문 포함)시 2Km이상 도보 또는 도선 (선박포함)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 할 리·동의 읍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당해 기관으로부터 4Km이내에 학 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국민학교가 있는 경우	국민학교가 있는 경우	국민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당해 면(읍의 경우에는 동 또는 리를 말함)의 전화보급율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당해면(읍의 경우에는 동 또는 리를 말함)의 산지면적비율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석탄광구까지의 직선거리	7km이상 8km미만	6km이상 7km미만	5km이상 6km미만	4km이상 5km미만	4km미만	

- 비고 :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광산지역등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출입항신고소·검문소·등대와 석탄광구로부터 4km이내 기관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하거나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역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은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벽지지역 <<시행일 2001.1.1.>>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 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가지역: 39점이상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나지역: 31점이상 38점이하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시	17회 이상	13회 이상	9회 이상	5회 이상	4회 이하	·다지역: 23점이상 30점이하

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20회 미만	16회 이하	12회 이하	8회 이하		·라지역: 15점이상 22점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개설률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를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비 고 :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 역 등 급 별 배 점 기 준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 여객선의 운항소요 시간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가지역: 20점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미만	2km이상 3km미만	3km이상 4km미만	4km이상 5km미만	5km이상	나지역: 15점이상 19점이하
1일정기여객선의 운행 왕복회수	1일8회이상	1일4회이상 7회이하	1일2회이상 3회이하	1일1회	1일1회미만	다지역: 10점이상 14점이하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병원 또는	의원 또는	약국만 있는	의료시설이		

	보건소가 있는 경우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 경우	경우	없는 경우		라지역: 9점이하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전화 또는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전화보급율이 20%이상인 경우	전화보급율이 20%미만인 경우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식수확보방법	상시 간이상수도 이용	상시 우물이용	계절적으로 급수지원	상시 급수지원		

비고 : 1. 낙도출장소·선박출입항신고소·검문소 및 등대는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하거나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역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2.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은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시행일 2000.1.1.>>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 기준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가지역: 31점이상 ·나지역: 23점이상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30점이하 ·다지역: 15점이상 22점이하 ·라지역: 14점이하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횟수의 합)	1일8회이상 15회이하	1일4회이상 7회이하	1일2회이상 3회이하	1일1회	1일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포함) 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 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사용	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미만		

	300인 미만	200인 미만	10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 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가 지 역	비무장지대
나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8km이내 지역
다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이내 지역
라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이내 지역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